



전력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 주요내용

협회 전문위원 전 해 성

정부가 2001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2002년 2월 8일 제227회 국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되었고, 2월 28일 제8차 본회의에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통과되어 3월 25일 법률 제6673호로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가장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제12조의2로 신설하려던 “건축사사무소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공사감리특례규정이었다.

이것은 민간 일반건축물의 중요전기설비(전압 600V 이상, 용량 75KW 이상)공사감리를 건축법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의 2원화로 인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의 근본적인 취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우리 전력기술인들은 공사감리 특례규정의 삭제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산업자원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의 지정·보호 및 지정취소(제6조의2, 제6조의3)

신기술의 보호 및 취소에 관한 관련사항은 개정전의 법률에서는 규정되지 않았고 시행령 제7조(신기술의 보호)와 시행규칙 제3조(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신청), 제4조(신기술의 지정·고시), 제5조(신기술의 보호 및 지원), 제6조(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각각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기술의 지정·보호 및 지정취소는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새로 신설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보호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 적용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신기술의 지정취소)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혼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전력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제8조)

법률 개정전에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력기술인 증명서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

제8조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3.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 대여금지(제11조제6항)

법률 개정전에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

록 벌칙을 신설함.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의2. 제1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4.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대여금지(제12조제5항)

법률 개정전에는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

제12조(공사감리 등)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의3.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5. 설계·감리업자의 등록증 대여금지(제14조제3항)

설계·감리업자의 등록증 대여금지규정은 이번 개정법률에서 새로 신설된 것으로 설계·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규정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6. 설계·감리업 등록시 대표자자격 삭제(개정전 제14조제5항)

개정전의 법률 제14조제5항은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대표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삭제함.

〈개정전 법률〉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계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대표자로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설계·감리업자 선정 등(제14조의2)

제14조의2는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인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설계·감리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3항에서는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이번 개정법률에 신설됨.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력·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설계업·감리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제16조의2)

이 규정은 발주자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

화하고 신고를 한 때에는 합법적인 업무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별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9. 공제사업(제18조의2)

전력기술단체는 설계·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도모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

제18조의2(공제사업) ① 단체는 설계·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증과 용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내용·공제금·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0. 별칙의 신설 및 강화

가. 신설된 규정

이번 개정법률에서 특기할 사항은 별칙이 많이 신설되고 강화된 것인데 앞에서 관련규정을 설명하면서 별칙까지도 포함시켜 밝힌 바와 같이 종전의 법률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별칙이 없었던 ①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제8조) ②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 대여금지(제11조제6항) ③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대여금지(제12조제5항)등이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됨으로써 별칙이 신설되었고, 이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자 및 그 상대방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의 법령에 없었던 설계·감리업자의 등록증 대여금지규정(제14조제3항)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증명서의 대여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토록 함.

또한 이번 개정법률에서 별칙 제27조의2와 제27조의3 두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들 조항의 신설은 전기공사업법과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 또는 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그리고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각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제27조의2(별칙)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조의3(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 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강화된 규정

개정전 법률 제29조제4호에서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법률에서는 제28조제1항으로 이관 규정하여 공사감리와 동일하게 제11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함.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⑤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개정전의 법률〉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

다. 제27조(벌칙)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제29조의2제1항) 신설

제29조의2(양벌규정) 제1항에서는 제27조의 2(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함.

제29조의2(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된 조항

개정전의 법률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이던 것을 개정법률에서 “시·도지사”的 권한으로 개정하였는데 그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제14조제1항) : 설계업·감리업의 변경시에도 등록을 하도록 함.

나. 설계업·감리업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제16조)

다. 감독(제23조제1항)

라. 과태료 부과·징수(제30조)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전의 법률〉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시·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전의 법률〉 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산업자원부장관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전의 법률〉 제23조(감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전의 법률〉 제30조(과태료)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법률은 2002년 3월 25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개정법률에서 새로 신설된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의 규정은 1년이 경과한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신기술 관련 경과조치

개정전의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력기술은 개정법률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둘으로써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도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부칙 ②(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동조 각호의 자에게 권고한 기술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로 고시한 전력기술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끝>